

제주4·3과 젠더기반폭력

장숙인 ■ 서울시립대학교*

〈국문요약〉

제주4·3은 민간인을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과 집단학살, 전쟁범죄가 자행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냉전의 반세기동안 반공 이데올로기에 의해 모든 폭력행위는 정당화되고 은폐되었다. 특히 무력분쟁 중에 전쟁전략·무기로 사회적 약자에 가해지는 젠더기반폭력은 그 특성상 더욱 침묵되어왔다. 이 논문은 젠더기반폭력의 프리즘으로 제주4·3의 본질을 재조명한다.

당시의 젠더기반폭력은 주요 가해자였던 서북청년회 출신의 군·경찰에 의해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폭력과 살해, 성적고문, 도피자가족 살상, 성폭행·강간, 성적착취 및 살해, 집단강간, 강제결혼, 성교행위의 강제 등 8가지 유형의 메커니즘으로 자행되었고, 민간인 살상, 집단학살, 고문 등 국제법상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적 범죄를 구성하는 폭력행위들과 결합되어 가해졌다.

젠더기반폭력은 제주4·3이 일부 좌파세력에 대한 진압 수준을 넘어 사회적 약자인 민간인을 무차별적 살상과 인권유린의 대상으로 삼은, ‘국가권력에 의해 승인된 제노사이드’였음을 증명한다. 이에 대한 추가적 진상조사를 통해 제주4·3의 성격이 새롭게 규명될 필요가 있다.

*주제어: 제주4·3, 젠더기반폭력, 제노사이드, 젠더폭력, 전쟁범죄

I. 서론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다(제주4·3특별법 제2조). 1947년 3·1절 기념대회에서 경

*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강사(E-mail: sukinj@uos.ac.kr)

이 논문은 2022년도 제주4·3평화재단 4·3학술연구 지원사업의 기금으로 수행한 연구임.

찰의 발포로 초등학생과 젓먹이를 안은 아낙을 포함한 민간인 6명이 사망한 사건이 제주4·3의 도화선이 되었다. 공식사과 없이 이를 정당방위로 규정한 데 대해 전체 직장의 95%가 참가한 민관합동총파업으로 제주도민들이 강력한 항의로 맞서자 미군정은 제주도를 사회주의로 몰든 ‘붉은 섬(Red island)’으로 낙인 찍고 육지에서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을 대거 유입시켜 민중을 탄압하였다.

남한총선거를 앞둔 1948년 4월 3일, 미군정의 폭압과 단독정부 수립반대를 주장하는 일부 좌파세력에 의한 무장봉기가 일어났다. 미군정과 한국정부는 군·경찰과 무장단체를 투입하여 대대적인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무차별적 토벌작전으로 3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특히 북제주군의 두 개의 선거구에서 투표 자체를 보이콧한 이후, 제주도 전체가 빨갱이 근거지로 매도되어 잔혹한 정치학살(politicide, 정치적 제노사이드)이 자행되었다.¹⁾

그러나 제주4·3의 진실은 냉전의 반세기동안 공산폭동으로 왜곡된 채 침묵을 강요당했다. 199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해 2000년 제주4·3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이 추진되었다. 이어 대통령의 사과, 국가추념일 지정, 평화공원 건립,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역사적 진실을 찾아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세력에 의해 공산폭동으로 왜곡·편향되거나 이념갈등의 소재로 정치적으로 소비되고 있는 것 또한 제주4·3의 현실이다.

제주4·3은 제주의 지방사이자 한국 현대사인 동시에 냉전의 국제정치사이다. 냉전 초기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첫 제노사이드로, 냉전사와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냉전기 동아시아에서는 이데올로기를 명분으로 특정 집단을 적대시하여 무참한 폭력과 살상으로 희생시킨 정치학살이 연이어 일어났다. 제주와 한국을 넘어 냉전사의 관점에서 보면, 1948년 ‘제주의 봄’은 동아시아 정치적 제노사이드의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젠더기반폭력(Gender-based Violence)²⁾을 통해 정치적 제노사이드

-
- 1) 제노사이드는 1948년 UN총회가 채택한 집단학살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the Crime of Genocide)에서 ‘특정 국가, 종족, 인종, 또는 종교집단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할 의사를 갖고 행하는 행동’으로 정의되었다. 하프와 거(Harff & Gurr 1988)는 제노사이드는 희생자집단이 주로 민족, 종교, 국적 같은 공동체의 특질을 공유하는 반면, 정치학살은 정권과 지배집단의 위계적 지위 또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집단이 희생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따르면, 해방정국에 ‘미군정의 탄압과 남한단독정부 수립에 대한 정치적 반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제주4·3도 정치학살로 정의될 수 있다.
 - 2) 젠더기반폭력은 ‘전시상황 및 무력분쟁지역에서 물리적·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성적폭력’을 말한다. 대다수의 무력갈등상황에서 적대적인 집단에 대한 전쟁무기·전략의

로서의 제주4·3의 본질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 젠더기반폭력의 개념을 다루고, 젠더 관점에서 제주4·3 사건에 접근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였다. 3장은 제주4·3의 증인과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당시 자행된 젠더기반폭력을 8개의 유형으로 분류하고, 4장에서 이러한 유형별 폭력행위의 메커니즘과 제도 사이드와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젠더기반폭력이 제주4·3이 적정 수준의 공권력 행사를 넘어서, 국가폭력에 의한 정치학살임을 입증하는 폭력행위라는 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추가적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제언으로 결론을 대신하였다.

II. 기존 연구 검토 및 한계

1. 전쟁무기·전략으로서의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젠더(gender)는 생물학적 차이에 따른 성별(sex)과 함께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개념으로,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뜻한다. 성별의 의미가 생물학적 구별을 넘어 특정 상황과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인데, 오랜 역사와 문화 속에서 성별 특성, 감정, 가치관, 기대, 규범, 역할, 환경, 제도를 포함하여 상호 연결된 많은 요인들이 다차원의 복잡한 문화적 구성을 거치며 만들어지기 때문이다(Russo & Pirlott 2006, 179-180).

이러한 개념 구분에 따르면, 성적폭력(sexual violence)과 젠더기반폭력은 인간의 ‘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전자는 남성 또는 여성을 대상으로 당사자의 동의 없이 가해진 강압적 행위를 말하고, 후자는 사회문화적으로 부여된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을 통칭한다(김민정 2021, 6)는 점에서 다르다. 폭력행위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누구로 보는가에 대한 인식에 근본적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성적폭력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지만, 젠더기반폭력은 사회적으로 구성된 ‘남성성’의 주체가 물리적·사회적으로 약한 상태의 개인 및 집단의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공격으로 본다(Baaz & Stern 2013, 22-23). 이 논문은 제주 4·3에서 자행된 성적폭력을 특정 성별집단이 아닌 사회적 약자인 민간인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정서적 파괴행위로 보고, 젠더기반폭력으로 정의하였다.

수단으로 젠더기반폭력이 자행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국제법적으로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구성하는 중대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다.

인류의 수많은 전쟁과 무력분쟁에서 성적폭력은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전시의 일탈 또는 보상, 갈등의 산물, 개인적 폭력행위로 간주되어왔다(Campanaro 2000, 2557-1558). 1990년대 르완다, 보스니아, 콩고 내전을 계기로 전시의 성적폭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인식의 변화가 생겨났다. 1993년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선언>에서 ‘전쟁무기로서의 성적폭력(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war)’을 젠더기반폭력으로 규정한 이후,³⁾ 국제적 차원의 정책 논의와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거쳐 국제사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주의 범죄를 구성하는 위법한 폭력행위로 금지되고 있다(Baaz & Stern 2013, 1-2; Davies & True 2015, 1).⁴⁾

전시의 젠더기반폭력은 성적폭력을 통해 전통적 젠더 관념과 사회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지배세력의 권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힘’과 직결된다. 무력분쟁 상황에서 민간인에 대한 성적 폭력은 두 집단 간의 권력관계를 드러내고, 지배세력의 우위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는 특정 집단의 사회적 구조와 결속력을 파괴하며, 무력화된 개인과 공동체를 위협하고 비인간화하는 폭력의 수단으로 쓰인다(Peltola 2018).

전시 상황의 성적폭력은 대부분 여성과 어린 소녀들을 향한 공격으로 일어나지만, 온전히 여성만의 피해와 희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잠재적으로 적군의 병력이 될 수 있는 남성의 가족이자 집단 구성원인 여성에게 성적위해를 가함으로써 남성들과 공동체 전체에 물리적인 패배와 수치심, 좌절감, 무력감과 같은 윤리적 고통을 주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남성과 소년들에 대한 동성애성폭행, 여성화, 생식기 손상, 성별 선택적 살해와 같은 폭력행위들은 성 정체성을 무기로 피해집단의 남성성을 부정하고 지배세력의 압도적인 우위를 과시하기

3) 1993년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선언은 젠더기반폭력을 1)성폭력, 성적착취, 강제적 성매매, 인신매매, 성희롱 등의 성적폭력행위, 2)가정폭력, 성기절단, 지참금살인, 명예범죄, 여성혐오범죄 등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행위, 3)전쟁무기로서의 강간 등 집단에 의한 조직적·구조적 폭력으로 구분하였다(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Article 1, 1993 (A/RES/48/104)). 이어 1998년에 로마규약이 일상적·조직적 성/젠더기반폭력을 제노사이드,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행위로 인정한, 첫 국제법적 문건으로 채택되었다.

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0년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안보리결의안 1325호(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on Women, Peace, and Security)>를 채택하여 분쟁의 예방·해결 및 정책결정,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의 여성대표성, 젠더 관점의 필요성, 무력갈등상황에서 소녀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강간, 성적학대를 포함한 젠더기반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특별조치를 촉구하였고(Willett 2010), 2008년 안보리결의안 1820호는 무장분쟁에서 발생한 젠더기반폭력을 전쟁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제노사이드를 구성하는 행위로 규정하였다(United Nation Security Council 2008).

위한 것이다(Ferrales et al. 2016). 그런 점에서 전시상황의 성적 폭력은 권력과 연결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성을 공격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전쟁무기·전략으로서의 젠더기반폭력’으로 규정되는 것이다.

2. 젠더 관점의 제주4·3연구

냉전기 동안 제주4·3은 공산폭동으로 왜곡되어 그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 것조차 금지되었다. 특히 젠더기반폭력은 나와 가족, 이웃이 외지인에게 성적유린을 당했다는 수치심과 모멸감, 그리고 보호하지 못한 무력감과 자괴감의 정서적 고통을 공유한 공동체 전체가 침묵함으로써 집단기억에서 소거되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목격자도 입 밖으로 ‘말할 수 없는 진실’로 더욱 은폐되었다.

젠더기반폭력은 남성과 여성이 다르게 경험하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현상이다(Russo & Pirlott 2006, 194). 제주4·3에서도 성별에 따라 다른 방식의 폭력이 가해져 남성과 여성이 겪고 경험한 폭력의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달랐다(권귀숙 2014). 남성들은 주로 토벌대와 무장대에 의한 폭행, 고문, 집단사살, 강제징병, 집단수감 등으로 희생되었지만, 여성들은 가족을 대신해 죽임을 당하는 대살(代殺), 나체고문, 성적학대, 강간, 살해, 신체훼손 등 비인간화와 인권유린의 대상이 되었다. 도피자·총살자의 가족으로 고문과 폭행을 당하거나 살해되었으며, 가부장적 질서 속에서 성폭력과 성노예화, 강제결혼의 피해자가 되어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권귀숙 2011, 66). 그러나 여성들의 피해와 희생은 전체의 일부로만 다뤄져왔고, 그 중요성 역시 주목받지 못하였다.

1990년대 후반, 제주 지역사회에서 여성의 시각에서 제주4·3사건을 조명하는 학술활동이 시작되면서 젠더의 관점으로 접근한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다.⁵⁾ 과거에는 여성을 노약자의 일부로 간주하여 피해자 집단의 하나로 분류하지 않았고 주로 여성에 대한 폭력행위의 가혹성에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권귀숙 2014), 2000년대 이후, 여성이 겪은 제주4·3의 경험, 트라우마, 증언체록, 구술 생애사 연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제주여성사, 홀어명, 제주4·3사건과 여성의 기억, 국가폭력과 여성인권, 성적폭력의 정치성 등의 주제로 확장되어 여성정치학과 젠

5) 1998년 제주4·3 제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동아시아 평화와 인권)에서 ‘냉전체제 폭력과 동아시아 여성’ 분과를 시작으로 2007년 4월, 제주여성인권연대의 <제주4·3과 여성> 인권포럼, 2011년 11월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의 <제주4·3과 여성수난사> 토론회가 열렸고, 2013년 11월에는 제주4·3평화재단의 후원으로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가 <제주4·3과 여성에 대한 학문적 체계 수립>을 표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더정치학의 여성주의 시각이 부족했던 제주4·3연구의 공백을 채우고 있다(김상숙 2021; 김성례 1998, 2001; 김은실 2018; 권귀숙 2001, 2004, 2011, 2014; 박상란 2019; 신상숙 2008; 염현주 2021; 이정주 1999; 정원옥·권귀숙 2016).

그러나 주요 피해자·희생자인 여성의 고통과 트라우마에 초점을 두는 것만으로는 제주4·3의 국가폭력에서 여성들이 주변화되어온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 폭력의 대상으로 여성을 강조하는 것은 오히려 그 폭력행위의 본질과 범죄성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4·3에서 자행된 성적폭력은 여성이 아닌 ‘인간’에 대한 폭력,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으로 재조명되어야 한다. 젠더기반폭력은 제주4·3에서의 성적폭력이 피해자인 여성들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도덕적 손상을 초월하여, 특정 집단의 민간인에 대한 집단살상과 같은 비인도적인 범죄의 수단이었음을 증명하는 폭력행위이다. 이 논문은 젠더기반폭력의 렌즈를 통해 제주4·3이 냉전기 국가건설 과정에서 정치권력의 이익에 반하는 의사를 표출한 지역의 주민과 공동체가 적대집단으로 규정되어 집단학살 방식의 폭력에 희생된 정치적 제노사이드임을 명확히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Ⅲ. 제주4·3의 새로운 프리즘: 젠더기반폭력

1. 제주4·3 젠더기반폭력의 가해자

제주4·3 당시의 상황은 사실상 무장대와 토벌대의 내전상태와 다름없었다. 산으로 들어간 반란군과 해안을 점령한 진압군의 무력대치 속에서 중간지대에 놓인 민간인들은 양쪽에서 가하는 물리적 공격, 착취, 폭행, 살상 등의 폭력행위에 무방비상태로 희생되었다. 직접적인 전투가 적었던 두 무력집단은 상대방에 대한 증오와 보복을 민간인에 대한 폭력을 통해 전달하고 적의 공포와 적개심을 극대화하기 위해 잔혹한 방식의 폭력을 가했다. 그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약세 상태에 있는 남성과 사회문화적 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이 자행되었다. 신체적 살상에 더해 성적 수치심, 모멸감, 무력감, 패배감 등의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개인과 공동체의 공포를 증폭시키는 무기로 활용한 것이다.

제주4·3과정에서 젠더기반폭력을 저지른 주요 가해자는 서북청년회(서북청년단, 약칭 서청) 출신의 군경들이었다.⁶⁾ 서북청년회는 미군정 당시 이북 출신의

청년들로 조직된 극우 반공주의단체로, 제주4·3 과정에서 군·경찰의 신분으로 고문, 법·명령의 집행, 폭행, 집단학살에 관한 임시결정 권한을 행사하며, 사실상 국가공권력을 대리하였다. ‘좌익탄압’과 ‘반공’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지원한 민간무장단체(Progovernment militia) 중 하나였던 서북청년회의 단원들은 1947년 3·1 사건 직후 제주도로 파견되어 민간에 대한 감시 및 탄압 활동을 수행하였고, 1948년 이후에는 무차별적 토벌작전에 대거 투입되어 집단적·조직적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젠더기반폭력을 자행하였다.

서청과 같은 무장단체가 민간인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그 행위의 정도와 유형은 ‘정부와의 관계’와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의 영향을 받는다.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정규 보상을 지급받는 준공식(semiofficial)형의 단체보다 정부와의 공식적인 연계가 없는 비공식(informal)형의 집단일수록, 그리고 조직 구성원이 현지 충원보다는 외지에서 유입되어 지역사회와 인적·문화적으로 연계된 정도가 낮은 집단일수록 민간인을 대상으로 더 잔인한 폭력을 가할 위험성이 높아진다(Carey & Mitchell 2017, 128-131). 이에 따르면, ‘평안도’ 출신의 ‘우익’ 청년단체가 정부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무력행사권한을 위임받아 ‘폭도’와 ‘빨갱이’로 규정된 ‘타지’의 민간인을 무차별 살상한 제주4·3의 폭력이 설명될 수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서북청년회 단원들이 정기적인 봉급 없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강매, 탈취, 뇌물, 약탈 등을 통해 이익을 취했고, 제주에 정착할 목적으로 재력이 집안의 여성과 강제결혼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불법적 폭력행위를 심판하고 제재할 상부기관이 없었고, ‘반공’을 내세워 무소불위의 권한을 위임한 정부 또한 이를 통제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군정과 한국정부의 정치적 묵인과 비호 속에서 폭력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은 ‘반공’의 정치적 정당화 뒤에 숨어 반성하지 않았고, 그들의 폭력행위는 처벌되지 않았다. 젠더기반폭력의 특성상,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과 구술 기록 또한 많이 남아있지 않다. 가부장적 문화와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사회에서 외지인에 의한 성적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일은 용납되기 어려웠고, 반공과 군사독재의 억압적 정치시스템 속에서 국가에 맞서 사실을 밝히고 법적 처벌을 요구하기란 더욱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침묵의 역사로 남겨져왔다.

6)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에서 확인될 뿐만 아니라 당시 희생자의 80% 이상이 군·경찰과 서북청년회로 구성된 토벌대에 의해 사망했다고 기록한 주한미육군 사령부의 「제주도사건상황보고서」와 가해자별 비율 중 토벌대가 각각 78.1%, 84%로 집계된 4·3위원회와 제주도의회의 신고서의 통계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제주4·3 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73).

2. 제주4·3 젠더기반폭력의 메커니즘

전쟁 또는 무력분쟁지역에서 젠더기반폭력은 남성성과 젠더 규범을 과도하게 발휘하여 집단 및 공동체를 조직적으로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된다(Stark & Wessells 2012, 677). ‘권력’을 상징하는 ‘남성성’을 과시함으로써 새로운 세력의 우위와 지배를 정당화하고 적을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민족·종교·인종·이데올로기 등이 다른 집단에 대한 제노사이드와 연결되며 특정 집단 또는 공동체의 절멸과 새로운 세력에 의한 사회질서의 구축을 목적으로 다층적인 수준에서 일어난다(Ferrales et al. 2016, 566-568).

젠더기반폭력은 무장세력 및 남성에 대한 종속이 강요된 상태에서 여성들을 성적 수치심을 주는 폭력행위에 노출시키고, 물리적·도덕적으로 훼손된 자아에 대한 모멸과 사회적 불명예를 안겨줄 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공동체를 대신하여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는 강력한 수단이 되어왔다(Willett 2010, 154). 남성과 소년들은 동성애성폭행, 고문·폭행으로 인한 생식기손상, 민간인(가족 또는 지인 포함)에 대한 강간, 강제성행위의 강요,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을 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폭력을 겪었다(Carpenter 2006, 93-97). 전시 상황에서 젠더기반폭력은 강간, 성적착취, 생식기 손상, 강제임신·불임, 성적학대와 모욕, 비인간화, 성별 선택적 살해, 강제결혼 등 다양한 신체적·정신적 폭력행위의 방식으로 가해진다(Ferrales et al. 2016, 567). 제주4·3도 예외가 아니었다.

<표 1>은 제주4·3에서 일어난 폭력 중에서 ‘전쟁무기로서의’ 젠더기반폭력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를 8개 유형으로 분류한 것이다. 당시에도 성폭행, 성희롱, 집단강간, 성노예화, 강제결혼 또는 가족과 지인,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전락결혼 등의 젠더기반폭력이 일상적으로 자행되었음이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서 확인된다. 폭력의 당사자인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목격자들의 증언으로 새로운 피해사실을 추가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지만, 현실적 한계로 인해 기존 문헌의 조사와 수집된 인터뷰 자료와 증언내용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대신하였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제주4·3연구소의 1000인 증언채록 및 증언마당, 생활사 총서, 「4·3은 말한다」 1-5권 등 인터뷰 기록 등에 수록된 증언과 구술 자료를 바탕으로 젠더기반폭력에 해당하는 사례들을 발췌하여 폭력행위를 유형화하였다. 관련 연구들을 참조하여(김양희 2013; Nebesar 1998; Peltola 2018; Shaibakova 2020; Willett 2010; Wood 2009) 강간, 성적고문·생식기손상, 성노예화, 강제성매매, 강제낙태, 강제임신 등 성적폭력의 범주에 드는 폭력행위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다. 다음 장에서 제주4·3의 젠더기반폭력 피해사례를 바탕

으로 각 유형별 폭력행위들의 전략적 의도와 메커니즘을 분석하여 젠더기반폭력이 정치적 제노사이드의 수단으로 자행된 것임을 규명한다.

(표 1) 제주4·3 젠더기반폭력의 유형과 메커니즘

폭력 유형	메커니즘
임산부/태아에 대한 살상	재생산기제로서의 여성성에 대한 공격·비인간화
성적고문 및 치사/생식기 손상	개인 및 공동체의 수치심과 공포감 조성
도피자가족에 대한 살상(대살)	가족관계의 파괴, ‘적’에 대한 심리압박 및 사기저하
성적학대/강간	성적 모욕과 수치심, 침묵의 강요
성적착취(시도) 후 살해	지속적 성적폭력을 통한 신체적·정서적 위해
집단강간	사회적 낙인을 통한 인격살인
강제결혼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및 인권유린, 공동체의 파괴
성교행위의 강제	비인간화, 힘의 우위에 의한 남성성의 여성화

* 출처: 저자 작성

IV. 제주4·3에서의 젠더기반폭력: 유형별 사례분석

1. 임산부/태아에 대한 살상(Maternal/Fetal Mortality)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발생한 무력분쟁상황에서 적에 대한 증오는 상대편을 비인간화(dehumanization)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군사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적과 그에 동조하는 민간인을 인간성이 결여된 존재로 취급하여 폭행, 살인, 노예화 등의 폭력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비인간화는 물리적·사회적으로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임산부와 태아를 대상으로 일어난다. 1948년 12월, 경찰 3명이 젊은 임산부를 발가벗겨 큰 팽나무에 매달아 대검과 철창을 꽂아 살해한 비학동산 총살사건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25세쯤 되는 임산부였습니다. 경찰은 그 여인의 거드랑이에 밧줄을 묶어 큰 팽나무에 매달아 놓은 후 경찰 3명이 총에 대검을 꽂아 찔렀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돌리자 경찰은 “잘 구경하라”며 소리쳤습니다.” (안인행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4-395).

“나오라고 해서 늦게 나오는 바람에 팽나무에 사람을 달아매었는데 만삭인 임신부를 비학동산 팽나무에 달아매 놓고 철창으로 찌르라고..... 고정규씨의 부인인데, 남편이 없다는 것이 죄였다.” (고창선 / 제주4·3연구소 2003, 16)

당시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임신부는 여성 중에서도 특히 생명을 잉태하여 물리적으로도 힘든 상태의, 가장 연약한 존재를 상징했다.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신체훼손, 고문, 살해는 여성의 신체를 빨갱이의 재생산기제로 간주하여 훼손하고, 태어나지도 않은 생명을 박탈하는 ‘살인범죄’이다. 적을 생산할 여성과 태아를 비인간화하여 지배세력의 우위를 과시하고, 잔혹한 폭력행위를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공포심을 극대화한 것이다.

“군인들이 폭낭 있는 데로 와서 잘 보라고 하는 거라. 아기 임신해서 한 여덟 달이나 됐을까.....남편이 무서우니까 산에 가버린 모양이야. 남편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집에 있다가 늦은 거라.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잡아다가 “잘 보라” 하면서 “이렇게 죽인다”고 하면서..... “잘 보라! 잘 안 보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인다. 잘 보라!”고 말하는 거야. 그냥 난... (줄을) 덩길 때만 봤주게. 돼지 달아매 듯 달아매 때만. 또렷이 보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김용렬 / 제주4·3연구소 2022, 107-108)

위의 증언은 대중들로 하여금 가혹한 폭력행위를 강압적으로 직시하게 함으로써 비인간화의 대상을 개인에서 공동체 전체로 확장시켰음을 보여준다. 가족과 이웃이 ‘인간이 아닌 존재’로 취급되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게 하여 마을 구성원 모두가 폭력 앞에 스스로의 인간성이 상실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한 것이다. 이는 가장 연약한 존재를 잔혹하게 죽이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전시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인간성 상실의 모멸감, 죄책감, 공포심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방식의 폭력이다(Burgers & Danelius 1988, 91).

당시 임신 6개월의 몸이었는데 상당한 고문과 구타로 8개월 만에 사산됨. (채계순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95)

“아이고. 우리 동서는 너무 땃허게 해서 죽었수다. 옷 벗겨서. 아랫도리도 다 벗겨서 밤새도록 밖에 세웠어. 그 추운 때에 옷을 벗겨서 쳐두드리다가 버치면 과 짹하게 세워놔서 가는 사람 오는 사람 다 보게 하고. 너무 지나치게 허영 죽었수다. 그 때 임신 중이었고 한 예닐곱달 됐었어. 그런 사람을 그렇게 너무 잔인하게 죽여 붙었수다.” (한정선 / 제주4·3평화재단·제주4·3연구소 2010, 229)

“그뉘 옥상이 있어. 간호원덜이 난리났어. “아이고 저거! 저거, 아기 뱀 여자를 총으로 쏘아붙젠 험저!” 막 소리가 들려. 보니, 아이 뱀 여자를 세워놓고 총으로 쏘아부는 거야. 군인덜이.” (양길현 / 제주4·3연구소 2015, 255)

“우리 마을에 후라이 선생이라고 얄전한 여선생이 하나 있었어. 임신해서 6개월도 안 된 후라이 선생 배를 창으로 찔러 죽였다는 소문이 막 돌았지. 아이고, 더러운 세상!” (정봉영 / 제주4·3연구소 2020, 19)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물리적 공격과 살해는 대부분 서북청년회 출신의 군·경찰들에 의해서 가해졌다. 무장대 토벌과정에서 마을의 민가를 수색하고 도피자가족을 심문하면서 임신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신체고문과 성적 가혹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 중에서 서북청년회 출신의 순경이었던 정용철에 대한 증언은 당시 임산부를 신체 및 성적고문으로 학대하고 육체를 훼손시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폭행 및 고문치사가 많았음을 시사한다.

“우리가 화북으로 피난갈 때야. 그 때에 올레에 군인들이 왈각 담아지더니 임신한 우리 어머니를 총으로 쏘버리겠다고 하는 거라. 진짜로 어머니 가슴에 총을 탁 대었어. 어머니 만삭이었어. 사복 입은 사람과 베레모 쓴 사람이 왔는데 사복 입은 사람이 산에 연락을 한다고 만삭인 어머니를 발로 광광 찼어. 발로 찬 그 사람, 이복사람 같았어. 애기 배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를 어디서 자꾸 만나고 있다고 생각했는지. 우리 아버지 이미 돌아가시고 없을 땐데……. 이제 보니 서북청년들이었어” (송순자 / 제주4·3연구소 2020, 152-153)

“뒤로 몽둥이를 끼운 채 무릎을 꿇려놓고 위에서 마구 밟았습니다. 난 당시 임신 중이었습니다. 임신했다고 사정했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유산했습니다.” (차경구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94).

“나는 대한청년단 분대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침에 정기보고를 하러

지서에 갔더니, 남편이 입산했다는 이유로 젊은 여자 한 명이 끌려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주임은 웬일인지 총구를 난로 속에 넣고 있더군요. 그리고는 젊은 여자를 훌쩍 벗겼어요. 임신한 상태라 배와 가슴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 주임은 시뻘겋게 달궈진 총구를 그녀의 몸 아래 속으로 찔러 넣었습니다.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정주임은 그 짓을 하다가 지서 옆 밭에서 머리에 휘발유를 뿌려 태워 죽였습니다. 우리에게 시신 위로 흙을 덮으라고 했는데 아직 덜 죽어있던 상태라 흙이 들썩들썩 했습니다.” (고태수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19).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은 공동체 전체의 정체성과 문화, 그리고 지역의 역사에 대한 공격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 전통적인 사회질서에서 ‘약자’이자 ‘피지배자’로 인식되는 여성과 어린이를 희생시켜 외부자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가족과 공동체의 ‘남성성’을 공격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에 상흔을 남기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제주4·3에서 임신부와 태아를 살해한 폭력행위는 낙태와 강제입신을 통한 인종청소가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같은 전략적 의도 하에 가해진 반인도주의적 범죄로 볼 수 있다.

2. 성적고문(sexual torture)·생식기 손상(genital harm)

고문은 국제법상 ‘인도에 반하는 죄’에 해당한다. 그 중에서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방식으로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성적고문은 가장 비인간적인 폭력 행위이다. 특히 맨몸으로 벗겨져 인간성을 배제당한 상태에서 감당하기 힘든 신체적 고통과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나체고문과 그로 인한 치사는 많은 권위주의체제와 독재정권에서 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의 대표적 사례가 되어왔다. 제주4·3에서도 나체고문과 생식기에 손상을 가하는 고문이 가해졌다. 남녀의 생식기에 물리적 공격을 가해 극심한 고통을 주고, 나체상태로 고문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으로 인간을 황폐화시키는 폭력행위들이 자행되었다.

1948년 말과 1949년 3-6월. 제주읍 수용소에서의 고문. “어떤 경찰은 여자들 옷을 다 벗겨서 천장에 매달아서 고문하였다.” (김겸택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87)

“비명소리가 귀를 찢었고 갖가지 고문을 눈뜨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일

단 흘랑 벗기고 고문을 시작했습니다.” (양경수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158)

1948년 4월. 경찰에 의해 “양은하는 고향을 찌르는 고문의 충격으로 사망했다.” 이 사건은 무장봉기 발발의 도화선이 되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479)

“어머니와 나는 이모부의 행적을 대라고 하여 옷을 벗기고 알몸 상태에서 손가락, 찢꼭지에 전기 고문을 하고 물고문 및 몽둥이로 전신을 구타당하였으며, 실신 상태가 되자 목포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김옥녀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496)

본인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엄지손가락에 받았지만, 남성의 성기에 전기 고문이 가해졌음을 증언함. (강서수 / 제주4·3연구소 2004a, 41)

“내가 전기고문을 어떻게 받은 줄 알아? 전깃줄 한 쪽은 여기(오른손 엄지손가락을 가리킴) 묶어. 다른 한 쪽은 내 **에 묶어가지고 막 돌려대는 거라. 이걸 당최, 견뎌낼 수가 없어. 내가 그걸 삼일 간 받은 거야, 삼일 간. 다른 사람, 저 우리 처남 조는 앞에서.” (문도현 / 제주4·3연구소 2015, 154)

성적고문은 대부분 육지에서 파견된 군·경찰과 서청 출신의 토벌대들에 의해 일어났다. 일제 시기의 경찰로, 고문기술 전문가로 유명했던 최난수 경감과 앞서 임산부와 태아 학살의 가해자로 진술된 서북청년회 출신의 순경 정용철에 관한 증언에서 지역사회와 연계가 긴밀한 제주 출신보다는 외지인들에 의해 잔혹한 가학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부인 한경자는 4·3때 서청이 잡아가서 젓가슴을 불로 고문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495; 제주4·3연구소 1989, 59)

1948년 11월. “하루는 제주경찰서에서 숙직을 하는데 여자의 비명소리가 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취조실로 가보니 여자를 나체로 만들어 거꾸로 매달아 놓고는 고문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한 여자가 나체인 상태로 매달려 고문당하고 있었어요.” (김호겸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222-223;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493)

“여자들 옷을 벗겨 더러운 행위를 하는 것도 다 봤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여자들의 옷을 벗긴 채 망루 위에 오랜 시간 앉혀놓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삼양지서 옆 밭에서 남자고 여자고 수십 명씩 잡아다 죽였습니다. 차라리 총으로 쏘아 죽일 것이지 그 마을 대동청년단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도록 강요했습니다.” (김제진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19)

여성들은 나체 고문뿐만 아니라 그 상태로 외부에 공개적으로 노출되고 신체를 훼손·학대하는 가학행위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남성이 자신이 입은 성적폭력의 피해로 증언한 유형은 고문으로 인한 생식기 손상이 유일한데, 특정 집단의 남성의 생식기능을 손상시키는 것은 피해집단의 남성성을 약화시켜 개인과 공동체의 신체적·문화적 ‘남성성’을 거세하는 방식의 폭력 행위이다(Ferrales et al. 2016, 576-578). 이러한 유형의 폭력은 적의 구체화된 형상으로서의 ‘남성’의 몸과 기능을 공격함으로써 상징적으로 그 집단을 무력화하는 것으로(Sivakumaran 2007, 270-274), 제노사이드의 수단이 된다.

3. 도피자가족의 대리살상(death in lieu)

무장 세력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당시 무장대에 합류하여 ‘산(山)사람’이 되었거나 어떤 이유로든 사라진 이들의 가족에 대해 무차별적인 학살이 감행되었다.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없는 경우, 소위 ‘도피자가족’으로 분류되어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무자비한 폭력을 당하거나 집단학살의 대상이 되었다.

“도피자 가족은 무조건 전멸시킨다는 말이 헛소문이 아니었어. 그날 동헌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모두 도피자 가족이었거든. 추사관 어르신네도 부인이 대신 죽은 거고. 우리 언니랑 할아버지도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매일 같이 도피자 가족이 죽었다는 소리만 들려오고...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목숨이 된 거야” (고정자 / 제주4·3연구소 2020, 235)

“화북국민학교로 마을사람들 다 모이라! 헌거야, 운동장에 다 갔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해. 산사람들과 내통한 사람들이라 하면서 팔십 몇 명을 불러냈어. 그리고는 운동장에서 다 죽인 거야. 그것도 그냥 총살해서 죽였으면 얼마나 좋아. 젊은 사람 다 불러내서 대창으로 해가지고 찢러 죽이게 헌거야. 그 사람들 모두

동네 사람이고, 삼촌 조카들 아니?” (백지훈 / 제주4·3연구소 2015, 245)

“산에 올라간 사람 가족은 전부 잡아다 창고에 수용시켰습니다. 총으로도 쏘지 않았어요. 폭발물 놔 갖고 폭사시켰습니다.” (강두봉 / 제주4·3연구소 2004b, 4)

입산한 아들과 연락한다고 하여 시어머니와 여동생을 구금한 뒤 고문을 가한 사례. “맞기만 해? 머리고 몸뚱이고 막 맞으니. 머리가 터져서 피가 팔팔 나고 했었어.....그런데 열리(중문면 예례리)에 잡아다 그 날에 죽여버렸어.” (강도화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81)

“남편이 산에 오르자 친척이 있는 우리 마을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삭인 상태로 와서 아기를 낳았지요. 경찰은 여자를 발가벗긴 후 민보단원과 부인회원들에게 창으로 찌르라고 강요하다가 총으로 쏘았습니다. 생후 한 달이 안 된 아기가 죽은 엄마 옆에서 버둥거리자 경찰은 아기얼굴에 대고 또 한 발의 총을 쏘았습니다.” (김원형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441)

“둘째 고모님과 고모부는 우리 아버지를 숨겨주고 방을 쫓는 이유로 잡혀간 거야. 고모님은 갓난쟁이 아기를 업은 채로 끌려가 결국 아기와 함께 총살당했어” (임춘화 / 제주4·3연구소 2021, 185)

1949년 1월 24일, 개수동. 고대규(高大奎)의 아내인 김산춘(28)은 외도지서의 출두명령을 받았다. 세 살 난 아기를 업고 나간 김산춘은 외도리 입구에서 아기와 함께 총살됐다. 이들 모자 외에도 강선(여, 60대), 강계효(50대), 신이신(여, 50대), 김정복(여, 37), 강재생(여, 30대), 김정(여, 30대), 강선행(여), 강경수(20대) 등이 남편 혹은 자식이 피신했다는 이유로 함께 희생됐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5)

“할머니 한 분이 있었어. 아들이 갑자기 사라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을 모르니..... 할머니를 끌고 가는 거야. 조금 있으니까 할머니가 풍덩! 쓰러지더라고. 시커먼 연기가 올라. 아무래도 창으로 소리 없이 죽이고 불을 붙여버린 거지. 낮에는 순경들이 쳐들어 와가지고 그냥 늙은이고 젊은이고 애고 어른이고 다 죽이고, 밤에는 산에서 내려와서 사람 끌고 가서는 총 없으니 돌맹이로 쳐서 죽이고.” (정봉영 / 제주4·3연구소 2021, 20)

집단학살로 희생된 여성들은 대부분 아버지, 남편, 아들, 동생 등 남성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 상황에서 토벌대의 ‘적’인 남성 대신 죽임을 당하는 대살로 처형되었다. 무장대의 가족은, 특히 아내와 자식은 어린 아이는 물론 태아까지 성적고문, 강간 등 다른 유형의 젠더기반폭력과 결합된 가혹행위와 살해의 대상이 되어 무참하게 희생되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무장대가 되었거나 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이 자신의 가족이 대신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고통과 굴욕감, 두려움을 갖도록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전통적인 관념의 ‘남성성’을 공격하여 개인 및 집단을 물리적·정서적으로 약화시키는 전략으로 사용된 것이다.

4. 성적학대(sexual abuse)·강간(rape)

전시와 무력분쟁상황에서 민간인을 성적대상으로 하여 강압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폭력행위는 주로 어린 소녀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과 강간으로 나타난다. 여성을 공격하여 ‘적’의 집단 및 공동체를 모욕하고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 폭력행위이다.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폭력을 개인은 물론 가족의 명예를 침해하고 남성인 구성원을 모욕하는 것으로 여기는 집단과 공동체에 사용될 때, 사회구조를 파괴하는 인종청소 또는 제노사이드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 있다(Wood 2009, 328-329).

제주도 서북청년회 강제능 단장도 글자 그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금품 갈취와 고문은 물론 살인과 부녀자 능욕을 일삼았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85)

“서북청년 이 놈들이 고안 놈들입니다. 처녀를 겁탈하고, 닭도 잡아먹고, 빨갱이로 몰기도 하고. 이 놈들이 사건을 악화시켰습니다.” (윤태준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82)

“서청은 참으로 지독했습니다. (주정공장)창고 부근에는 부녀자와 처녀들의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다. 서청은 여자들을 겁탈한 후 고구마를 쭈서대며 히히덕거리기도 했습니다.” (고성중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8, 45)

“우리 남편네 군인 갔다가 휴가 받아서 송당 왔을 때도, 토벌대들이 고운 처녀 있으면 데려오라고 해서 전부 해먹는다는 말이 돌았어.....평대에서 토벌대에게

힘든 건 처녀들 뿐이주. 군인들이 고운 처녀들을 데려다 달라고 해서 하룻밤 데리고 잠갔다가 보내고 그랬어. 처녀들이 많이 당했주. 그렇게 해서 시집도 간 여자도 있지만, 하룻밤 당하는 여자들이 많았어. 남편이 있거나 아기를 데리고 있는 여자들은 괜찮았는데 처녀들은 막 괴로웠어. 나중에 그 처녀들도 시집도 가고 그러니까 모두 비밀이지. 그 놈들 육지서 온 토벌대들이지 제주도 사람들은 아니야. 제주도 사람들은 무서워서 그런 짓도 못해!” (체계추 / 제주4·3연구소 2020, 242-243)

육지에서 온 토벌대 군인들이 시집가지 않은 여성들을 성적 착취의 대상으로 삼아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그렇게 시집도 간’ 여성도 있었다는 증언은 성적 착취가 강제결혼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성적학대와 착취의 대상으로 고통 받은 후에 죽임을 당한 여성들 또한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5. 성노예화(sexual slavery)

성적폭력과 강간은 그 자체도 매우 심각한 범죄이지만, 또 다른 폭력행위와 연결될 위험성이 매우 높은 유형의 폭력이다. 성적으로 착취하거나 성노예의 대상으로 삼는 폭력행위는 그 과정에서 강압적 폭력행사가 동반되어 여성 또는 남성의 신체에 치명적인 상해가 가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성적 강요를 거절하거나 또는 성적 착취 후에 그 범죄행위의 증거를 없애기 위해 여성을 살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증언되었다.

“4·3발발 이듬해 봄으로 기억되는데, 금덕리에서 소개온 한 처녀가 하귀 지서에 끌려와 매일 전기고문을 받았어요. 사라진 오라버니를 찾아내라는 게 빌미였지요. 그녀는 고문을 견디다 못해 몰래 도망쳐 바닷가에 숨었지만 며칠 후 결국 경찰에 붙잡혔지요. 우리 앞에 끌려왔을 때 그녀는 이미 초주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녀를 훌쩍 벗긴 후 “여자니까 대한청년단 여자대원들이 철창으로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찌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대신 죽을 것”이라고 협박하여...(중략)...경찰들은 그녀에게 몸을 씻을 것을 하려다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몸을 씻으면 살 수도 있었을텐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김계순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6)

“제주도가 시끄러우니까 금방 오지 못하고 1949년 가을철에 제주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남동생 강조정과 누이동생 강조순이 참혹하게 죽었다고 하더군요. 여동생은 상당히 예쁜 아이였는데 경찰이 노리개로 하려다가 죽인 겁니다.” (강조행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7)

위는 1948년 봄, 이미 경찰에 끌려간 오빠 강조행을 찾아내라는 구실로 경찰이 동생 강조순을 고문하고 나체 상태로 폭행하여 살해한 사건의 증언이다. 경찰들이 여성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성적대상으로 삼으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결국 공개적으로 죽인 것인데, 성적착취 또는 시도의 전후 과정에서 고문, 폭행, 살해, 집단강간 등 다른 유형의 폭력행위가 복합적으로 가해졌음을 알 수 있다.

6. 집단강간(gang rape)

집단강간은 무장대 토벌 및 진압과정에서 군·경찰들이 중산간마을에서 해변가로 소개 또는 산에서 내려와 집단적으로 수용된 민간인들 중에서 젊은 여성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강간한 폭력행위로, 최악의 성범죄에 해당한다. 아래는 해변가로 소개하여 함덕대대 본부 수용소에 있을 당시, 소위급 군인 8명이 일주일간 밤마다 들이닥쳐 젊고 예쁜 여성들을 집단적으로 강간했다는 증언이다.

“10시쯤 되니 군인들이 혼 8명쯤 와서 다 일어난 얼굴 들어 얼굴 들어, 막 험디다. 다 얼굴 들러, 얼굴 들러하던 이젠 다 일어난 얼굴을 드니까 자기네 보기에 젊고, 애기라도 없고 그런 사람덜. 그런 사람덜을 일주일 저녁을 하여튼 맨날 저녁에 와서 데리고 나가서 강간을 하는 거라마씀.....그렇게 강간해두고 가불면 그냥 밥도 아니 먹고, 그냥 매날 앓아 울음 그렇게 울어서 마썸.” (홍난선 / 제주4·3연구소 n.d., 7-8)

집단강간의 대표적 사례는 1948년 12월, 젊은 여성들이 군·경찰에 의해 집단강간 당한 후 전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표선면 토산리 집단학살 사건으로, 여러 증언에서 확인되고 있다.

달이 아주 밝은 날이었다. 마을을 포위한 군인들이 주민들을 모두 향사에 집결

시킨 후 18세부터 40세까지의 남자들을 분리했다. 또 여자들에겐 달을 쳐다보라고 한 후 20세 미만의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분리했다. 군인들은 이들을 표선국민학교로 끌고 가 감금했다가 주로 12월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총살했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0)

“만일 사상문제를 구실로 삼는다면 반드시 18세부터 40세까지만 사상이 있으며, 또 여자들인 경우 아무 근거도 없이 달빛에 얼굴을 비춰 골라갔는데 유독 젊고 예쁜 여자만 사상에 연루됐다는 말이다. 성적(性的)인 문제라고밖에 볼 수가 없다. 우리형수가 된 분은 당시 1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그 형수의 여동생은 당시 15세인데 유일하게 살아서 돌아왔다. 난 그 분을 찾아가 여러 차례 당시 상황을 물었지만 수치심 때문에 일체 말을 하지 않는다.” (김양학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2003, 391)

7. 강제결혼(forced marriage)

제주에서는 군·경찰과 성관계를 맺거나 혼인한 여성들을 ‘순경각시’라고 불렀다. 강제결혼은 지속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정식결혼에서부터 사실혼, 일시적 강간 등 관계양상은 다양하지만 강압에 의해 ‘관계’를 맺었다는 점에서 모두 강간에 해당된다(박상란 2019).

“거 무슨 이북 경찰관이라, 이북. 아니 서청이지. 그 서청놈들이 경찰관으로 들어왔어.....노○○이란 놈이.....결혼도 이디 오란 예쁜 색시 얻었지. 제주도 사람인디 어디서 강제로 데려단 산 거 같아.” (문도현 / 제주4·3연구소 2015, 158)

“중양에서 특별히 제주도애다가 빨갱이들을 잡으라고 해서 서청을 보냈어요. 이 서청은 갖은 악질 행위를 다 했죠. 남의 색시가 자기한테 오지 않으면 죽여버린 다든지, 재산을 달랜해서 안 주면 이걸 빨갱이다 해서 전부 죽여버렸어요.....우리 동네에 이쁜 색시가 하나 있었어요. 동갑인디, 가이가 무슨 사상을 알았겠어요? 그놈들한테 시집을 안 가니까 데려다가 죽여버린 거예요.” (현학철 / 제주4·3연구소 2015, 195)

육지 응원경찰과 서북청년회원들이 제주여성들과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맺는 ‘강제결혼’은 제주4·3에서의 젠더기반폭력을 가장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유형

이다. 자기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혼인관계 자체가 여성의 삶과 인생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폭력일 뿐만 아니라 전후 과정에서 성적억압과 폭행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또한 강압적 제안을 거절하거나 어쩔 수 없이 혼인상대가 된 여성들이 그 이후에 버림받거나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산에서 심부름하던 처녀들은 희생이 컸습니다. 아무개 처녀는 순경이 자신과 결혼을 하면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끝내 거절하여 죽었습니다.” (이춘형 / 오금숙 1999, 239).

지서에선 여자들도 많이 희생되었지. 그때 여기 경찰 중에 다섯 사람이나 결혼해서 자식도 낳고 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경찰관에 붙은 사람이 많지. 우선 살고 봐야 할 거 아니? (강태완 / 제주4·3연구소 2015, 132-133)

강제결혼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적대상으로 삼은 자체가 성범죄인 강간에 속하지만, 젊은 여성들을 성적 착취의 도구로 삼는 과정을 전후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다른 유형의 폭력행위들이 복합적으로 자행된다는 점에서 더 심각한 범죄적 폭력이다.

당시 제주읍내에서 여성에 대한 성적착취와 강제결혼 방식으로 성범죄를 일삼은 인물로 손꼽히는 인물 중에 9연대 정보참모였던 탁성록(卓聖錄) 대위가 있었다. 미약중독자였던 그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탓에 주민들의 희생이 컸고 워낙 악명이 높아 관련 증언이 많은데, 그 대부분은 ‘비위에 거슬리면 빨갱이라고 몰아 죽였다’거나 ‘여러 여성을 겁탈했다’는 내용이다.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복위원회 2003, 382)

“탁성록은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예쁜 여자들만 여러 번 바꿔가며 살았는데 나중에 제주를 떠나게 되자 동거하던 여인을 사라봉에서 죽이고 갔다. 그는 사형권을 가진 사람이었다.” (최길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복위원회 2003, 382-383)

“얼굴이 고왔던 강상유는 명문가 집안에 시집갔으나 4·3 당시 홀로된 상태였는데 탁 대위는 강제로 그녀를 범한 후 함께 살다가 어떤 일인지 그녀를 죽였습니다.” (강소희 / 오금숙 1999, 240)

위 사례는 당시 성폭력과 강제결혼을 저지른 가해자들도 그 행위가 불법적 성범죄였음을 인지하였음을 시사한다. 군인과 경찰 신분의 가해자들은 육지로 가기 전에 성범죄 사실로 인해 자신이 입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성적폭력의 결과를 아예 없던 것으로 인멸해야 했으므로 피해자들을 죽임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말살시켰던 것이다.

“지서에 있던 경찰들은 모두 얻영 살았지게. 군인들도 여기왕 아가씨들 이영 살다 가민 어디 강 죽이느냐 하면 서모봉에 데려가 죽이고 들양 땡기 단 동복하고 조천 사이에도 죽여볼고 돈딱 훌어명 데령 살았주게. 애기도 나고 헛주. 심영 땡기단 죽여가고 함덕 간에 얼마나 죽여 버려서. 방맹이(놀잇감) 허당도 쏘양 죽여 볼고. 훌머영들은 좀 예쁘다 생각되는 사람은 모두 순경 각시로 살아서.” (김형조 / 제주4·3평화재단·제주4·3연구소 2011, 286)

당시 육지 응원경찰 및 서북청년과 제주 여성들의 강제결혼은 단순히 성적대상으로 삼기 위해 강제적으로 결혼하는 경우 외에 제주에 정착하려는 목적으로 재력가의 딸과 결혼하여 재정을 확보하려는 사례도 많았다. 이북에서 남한으로 이주하여 생활기반이 취약했던 서북청년회원 중에는 강제결혼을 통해 제주도에 정착하려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주4·3 후반기인 1949년 3월 이후로 이들에 의한 강제결혼이 갈수록 많아졌다(오금숙 1999, 247).

“한 장교가 교사를 하던 한 여성을 탐내서 그녀를 위협해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여성의 동생을 보고 반해서 이번에는 그 동생과 결혼하려 했다.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하자 군인들은 총으로 위협했다. 그 여성의 집은 양철집(당시 부잣집의 상징)이었는데 총구멍으로 범벅이 됐다. 결국 그 군인 장교와 결혼한 동생은 육지 가서 살다가 나중에 이혼 당했다고 한다.” (이아무개 / 오금숙 1999, 248).

위의 사례는 군인 장교가 강압적으로 성적 폭력과 협박을 통해 자매인 두 여성을 취하여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가족 구성원 전체가 고통과 희생을 치른 경우이다. 이 외에 남편의 혐의로 감금되어 정치적 약점이 있거나 가족 또는 약혼자를 살리는 조건으로 어쩔 수 없이 서북청년회 출신의 경찰과 강제결혼을 선택한 여성들도 많았다.

“내가 살아나게 된 것은 정아무개 선생 때문입니다. 나와 약혼녀였는데, 그 선생

이 차 아무개라는 서청 간부와 결혼해서 나를 살려준 겁니다. 날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자신을 겁탈하려던 서청원과 결혼한 것입니다. 불행하게 살고 있다는 소문만 듣고 있는데, 지금도 그 때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홍경토 / 오금숙 1999, 246)

“서청 출신 박 아무개의 부인은 교사 출신 고 아무개인데, 그가 지서 주임 시절 강제결혼 하였다고 한다. 그녀는 할 수 없이 애를 낳고 살고 있지만, 지금까지 한 번도 그들이 부부동반 한 것을 본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김아무개 / 오금숙 1999, 246)

“양아무개는 서청단장 김재능이 그의 누나를 빼앗는 조건으로 목숨을 건졌다. 그게 결정적으로 그를 살린 요인이다. 그보다 못한 사람도 다 죽었으니까. 또 나중에 영화감독이 된 서청 출신 김 아무개도 성산포에서 맘에 드는 여자를 빼앗아 살았다.” (최길두 / 오금숙 1999, 247).

“화북 살 때 객원이라는 사람언니일거라. 아들이 산에 가버렸어. 지서에서 할망한테 아들 찾아내라 했어. 그 딸이 참 이뻐서. 지서 주임이 이북사람인데 어명산에 보내지 않을 거니까 자기하고 살자 해서 할 수 없이 그 언니가 같이 살았지.” (송순자 / 제주4·3연구소 2021, 165)

이러한 사례들은 국가권력의 대리자인 군인과 경찰들이 저지른 성적폭력이 많은 제주여성들의 삶을 앗은 성범죄였고, 가족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남겼음을 증언하고 있다.

8. 성교행위의 강제(enforced sexual intercourse)

공개된 장소에서 강제적으로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에게도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주는 폭력행위이다. ‘산사람’들과 연계된 민간인 또는 포로로 수용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 또는 그에 동조하는 잠재적 적으로 간주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를 강제함으로써 그들을 비인간화하고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폭력을 가한 것이다. 실제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한 후, 대중들에게 빨갱이들은 이같이 ‘비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짐승보다 못한 존재라고 비난하며 비인간화의 대상으로 조롱하였다는 증언이 있다.

무고한 양민들도 ‘빨갱이’로 몰아 폄박하고 살상을 저질렀던 서북청년회는 전통적 사회문화의 특성, 특히 공동체 의식이 강한 제주지역에서 여성을 보호하고 가족을 지켜야하는 ‘남성성’을 모욕하고 굴욕과 열패감을 줄 목적으로, 비윤리적 성행위를 강제하여 치명적인 수치심을 안기는 폭력을 가했다. 물리력으로 강제하여 성행위를 갖도록 강압하고 이를 대중에게 전시하는 것은 이미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남성과 여성의 젠더적 이분법을 사용하는 방식의 폭력인 것이다 (김민정 2021, 10).

“처녀 한 명과 총각 한 명을 지명해 앞으로 불러내더니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짓을 강요하는 거였어. 인간들이 아니었지.” (좌봉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복위원회 2003, 493)

“남녀를 불러내 구타하면서 성교를 강요했고 여자의 국부를 불로 지지기도 했습니다. 밤에는 그 썩는 냄새로 잠을 못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홍경토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복위원회 2003, 494)

“양민을 잡아다놓고 여자 남자를 잡아놓고 옷을 딱 벗겨서 여기로 포위를 한다고 그래. 포위해서 거기서 교미를 붙인다고 그러는데, 안 하면 그냥 막 몽둥이로 두드려 패고. 그러다간 나중에 셋사슴에 가서 총살시켜 버리고..... 그런 야만적인 인간들이 어디 있어. 같은 민족끼리.” (양순호 / 제주MBC 2001, 297)

공개적으로 성행위를 강제하는 것은 남성우월주의적 가치관과 규범에 기반한 폭력행위로, 강압과 위협으로 대상을 여성 또는 ‘약한’ 남성으로 비하·모욕하는 방식으로 지배세력의 ‘강한’ 남성성을 과시하는 것이다. 힘의 우위를 점한 남성이 적 또는 저항불능 상태의 포로들을 피지배자로 상징되는 여성과 동일시하여 ‘여성화’함으로써 그들의 남성성을 공격하고,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전략인 것이다. 제주4·3에서는 공산주의에 동조하거나 산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남성들을 사회문화적 약자인 여성과 함께 ‘더 강한’ 남성성에 굴복하도록 만들어 지배 집단의 물리력의 우위를 공고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폭력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는 비인간화와 패륜적인 행위를 강제하고 공개함으로써 공동체를 파괴하는 결과로 이어져 회복하기 어려운 깊은 상처를 남겼다.

V. 결론: 승인된 정치학살, 제주4·3의 국가폭력

전시의 젠더기반폭력은 대부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직접 피해를 입은 물론 그 여성의 가족인 남성, 나아가 마을 및 지역 공동체를 물리적·정서적으로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별의 넘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대한 폭력인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사회적 관계와 삶을 파괴하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범죄적 폭력인 것이다. 전쟁 또는 무력분쟁상황에서 인종청소, 문화말살, 영토점령, 적에 대한 비인간화와 모욕, 지배집단의 남성성 강화를 위한 효과적 수단으로 인식되는 한, 젠더기반폭력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Stark & Wessells 2012).

이러한 범죄적 폭력행위가 우리의 현대사에서도 국가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되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당시의 증언과 기록을 보면, 그토록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사실을 차라리 외면하고 싶을 만큼 끔찍하다. 그렇지만 다시는 그 같은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워 똑바로 기억하고 반성해야 할 우리의 역사이다. 제주4·3은 제노사이드와 젠더기반폭력이 국제법상 위법행위로 규정되기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국제법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적 논쟁과는 별개로, 민간인 집단학살의 수단으로 젠더기반폭력이 사용된 정치적 제노사이드라는 본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주4·3은 남북분단을 초래할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한 민족주의와 이를 이념적으로 적대시한 반공주의가 충돌한 사건이다. 미군정은 단정수립에 반대한 제주도에 좌익색출을 명분으로 서북청년회의 민간인 탄압과 폭력을 암묵적으로 승인하였고, 이승만 정부는 서북청년회단원들을 군대와 경찰에 편입시켜 공권력에 의한 제노사이드를 방조하고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 그 점에서 제주4·3은 켈먼(Kelman)과 해밀턴(Hamilton)이 제시한 ‘승인된 학살’과 상당한 유사성을 보인다(허선주·송은경 2020). 공식적으로 승인된 군대 혹은 준군사조직에 의해 수행되는 무차별적 폭력행위로, 어린이와 노인, 여성 등 무방비상태의 민간인들이 무자비하게 희생되었으며(최호근 2021), 민족, 종교, 이데올로기와 같이 다른 범주로 규정된 집단 또는 그 일부를 파괴하려는 목적의 집단학살과 같은 폭력행위가 정치권력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승인되었다. 그로 인해 폭력행사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들은 주어진 명령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 피해자와 희생자들 인간 이하의 존재로 비인간화함으로써 다른 도덕적 감각을 갖게 된 것이다(허선주·송은경 2020, 10). 서북청년회 출신의 군·경찰이 민간인들에게 그토록 잔학

하고 반인도적 방식으로 폭력을 가할 수 있었던 구조적 맥락이 설명된다.

한편 서청과 같이 정부와 비공식적으로 연계된 단체는 정부나 군 지도부의 관할의 대상이 아니라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성적폭력은 집단의 성격, 내부규율, 구성원 간의 응집성 등의 내부적 요인에 따라 빈도와 정도가 결정되며, 정부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Carey et al. 2015; Cohen & Nordás 2015). 이에 따르면, 제주4·3에서 저지른 서북청년회의 만행에 대해서 미군정과 한국정부와의 연계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전시의 성적폭력은 군사조직의 최상부의 지도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상부의 공식적인 결정 또는 지침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지 않은 자체가 폭력행사를 방조하고 가해자들로 하여금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목인에 의한 잔학행위(atrocity by connivance)’가 지속될 수 있게 한 것이기 때문이다(Wood 2009, 137). 따라서 제주4·3에서 민간무장단체인 서청에 의해 민간인에 대한 젠더기반폭력이 자행될 수 있었던 요인과 구조적 맥락에 대한 분석은 추후의 연구와 논의가 더 필요한 과제로 남겨두겠다.

제주4·3에서 일어난 국가폭력의 본질은 집단학살이 승인된 상황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공격, 남성성과 여성성을 파괴하는 비인도적 가혹행위와 살상을 동반한 폭력이 자행되었다는 것이다. 임신부와 태아에 대한 폭력과 살해, 성적고문, 도피자가족에 대한 살상, 성폭행 및 강간, 성적착취 시도와 이후의 살해, 집단강간, 강제결혼, 공개적 성교의 강요 등의 젠더기반폭력이 다른 폭력행위와 복합적인 형태로 가해졌다. 이러한 폭력행위들은 국가권력을 대리한 무장집단이 성을 수단으로 민간인들에 가한 비인도적 방식의 젠더기반폭력으로, 국제법상 명백히 전쟁범죄를 구성하는 불법행위이다.

외지인으로 구성된 토벌대와 서북청년회 출신의 군·경찰은 사라진 남성과 그 가족들을 ‘빨갱이’로 몰아 인간 이하의 존재로 비인간화하고, 도피자가족에 대한 대리살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무차별적인 폭력과 죽음으로 희생시켰다. 임신부는 빨갱이재생산의 기제로 간주해 성적 학대와 신체 훼손을 서슴지 않았고, 태아의 생명권까지 무참하게 박탈했다. 나체고문, 성적고문과 학대, 성적착취, 성폭행, 강간, 집단강간, 성노예화 및 그 전후의 살해, 남성을 여성화하는 성적 모욕, 강제결혼, 강제성행위의 강요 등의 폭력이 복합적으로 가해졌다. 민간인에 대한 증오범죄를 금지한 1949년 제네바협약 이후에도 법·제도적 제약이 부재한 상황에서 힘의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는 전쟁전략·무기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그동안 제주4·3에서 일어난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진상과악 및 역사적 기록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성적폭력의 피해를 ‘여성’의 문제로 인식해온 제주와 한국의 사회문화 속에서 성과 관련된 폭력을 드러내고, 기억하고, 공론화하는 것이 금기시되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더 관점에서 보면, 당시의 폭력행위들은 여성이 아닌 사회적으로 부여된 남성성과 여성성을 공격하고 전시함으로써 적의 공포와 자신의 힘의 우위를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 이는 명백히 ‘인간’에 대한 공격이자 반인도적 인권유린의 범죄행위이다.

제주4·3 과정에서 자행된 젠더기반폭력의 실태 및 그 전략적 의도 및 범죄성을 분석함에 있어 당시의 피해 및 희생 사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이 연구의 가장 큰 한계이다. 그러나 50년 이상 ‘말하지 못한 진실’로 묻혀 있다가 기록되지 못한 채 사라지고, 생존한 피해자와 목격자 중에도 침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체가 젠더기반폭력이 남긴 깊고 아픈 상흔임을 반증한다. 수적으로 많지 않은 증언이지만, 당시 민간인에 대한 공격과 집단학살의 폭력행위에 젠더기반폭력이 동반하여 자행되었음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은 제주4·3사건을 ‘국가권력에 의한 정치학살’로 규명하는 데 근거가 된다.

이 논문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인간의 존엄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전쟁범죄인 젠더기반폭력을 통해 제주4·3 당시에 자행된 국가폭력 자체에 초점을 두었다. 국내정치적 필요에 의해 이념갈등, 진실왜곡, 역사편취 등의 정치적 논쟁에 제주4·3의 역사적 진실과 의의가 흐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국제적 시각에서 인류보편의 인권 문제로 제주4·3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서 일어난 비극을 직시하고 반성함으로써 화해와 치유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향후 제주도청,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제주4·3희생자유족회 등 지역사회의 관련 단체들의 협력을 통해 피해자 및 목격자의 증언, 추가사례의 발굴이 이루어져 국제정치의 시각에서 제주4·3사건이 연구되고 논의되기를 희망하며 글을 맺는다.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김민정. 2021.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시대 젠더기반폭력의 처벌에 있어서 국제레짐의 역할.” 『동서연구』 33(1), 95-124.
- 김상숙. 2021. “젠더폭력과 과거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NGO 연구』 16(2), 39-76.
- 김성례. 1998. “국가폭력과 여성체험.” 『창작과 비평』 26(4), 340-352.
- _____. 2001. “국가폭력의 성정치학: 제주4·3 학살을 중심으로.” 『흔적』 2, 263-292.
- 김양희. 2013.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이해와 사례연구.” 『젠더분야 이슈리포트』 2, 1-62.
- 김은실. 2018. “국가폭력과 여성: 죽음정치의 장으로서의 4·3.” 『4·3과 역사』 18, 189-216.
- 권귀숙. 2001. “제주4·3의 사회적 기억.” 『한국사회학』 35(5), 199-231.
- _____. 2004. “4·3의 기억과 젠더 이미지: 4·3 영상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아시아여성연구』 43(2), 241-271.
- _____. 2011. “아방도 없고 허난 밥도 없고 - 제주4·3의 여성사.” 『4·3과 역사』 11, 65-68.
- _____. 2014. “제주4·3의 진상규명과 젠더 연구.” 『탐라문화』 45, 169-198.
- 박상단. 2019. “제주4·3에 대한 여성의 기억서사와 ‘순경각시’.” *Journal of Korean Culture (JKC)* 45, 301-333.
- 신상숙. 2008.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성폭력 개념사를 통해 본 여성인권의 성정치학.” 『페미니즘연구』 8(2), 1-45.
- 염현주. 2021. “제주4·3 이후 ‘홀어머 마을’ 여성의 경험과 기억.”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금숙. 1999. “4·3을 통해 바라본 여성인권 피해사례.” 제주4·3연구소 편.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 서울: 역사비평사, 236-258.
- 이정주. 1999. “제주 호미 마을 여성들의 생애사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4·3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원옥, 권귀숙. 2016. “끝나지 않은 애도: 4·3사건 피해여성은 말할 수 있는가.” 『4·3과 역사』 16, 215-246.
- 제민일보 4·3취재반. 1997. 『4·3은 말한다 4』. 서울: 전예원.

- _____. 1998. 『4·3은 말한다 5』. 서울: 전예원.
-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서울: 도서출판 선인.
- 제주4·3연구소. 1989. 『이제사 말해준다 I』. 서울: 도서출판 한울.
- _____. 2003. “증언자료.” 4·3증언 (2009년 4월 2일), http://www.jeju43.org/bbs/board.php?bo_table=3_4_1_1 (2022/10/24 검색).
- _____. 2004a. “홈페이지 속 증언.” 4·3증언 (2009년 4월 2일), http://www.jeju43.org/bbs/board.php?bo_table=3_4_1_1 (2023/10/24 검색).
- _____. 2004b. “04증언본풀이-강두봉.” 4·3증언 (2009년 4월 8일), http://www.jeju43.org/bbs/board.php?bo_table=3_4_1_1 (2023/10/24 검색).
- _____. 2015. 『제주4·3증언총서2: 구덩이 파래 비행장에 갔다 완』. 제주: 제주4·3평화재단.
- _____. 2020. 『4·3생활사총서1: 4·3과 여성, 그 살아낸 날들의 기록』. 제주: 도서출판 각.
- _____. 2021. 『4·3생활사총서2: 4·3과 여성2, 그 세월도 이기고 살았어』. 제주: 도서출판 각.
- _____. 2022. 『4·3생활사총서3: 4·3과 여성3, 덜 서러워야 눈물이 난다』. 제주: 도서출판 각.
- _____. n.d. “증언마당 자료.” 4·3증언 (2009년 4월 8일), http://www.jeju43.org/bbs/board.php?bo_table=3_4_1_1 (2023/10/24 검색).
-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연구소. 2010. 『아무리 어려워도 살자고 하면 사는 법』. 제주: 제주4·3평화재단·제주4·3연구소.
- _____. 2011. 『산에서도 무섭고 아래서도 무섭고 그냥 살려고만』. 제주: 제주4·3평화재단·제주4·3연구소.
- 제주MBC. 2001. “남겨진 의혹.” 『4·3과 역사』 1, 284-304.
- 최호근. 2021. 『제노사이드: 학살과 은폐의 역사』. 서울: 책세상.
- 허선주, 송은경. 2020. “민족주의에 의한 국가폭력의 정당화-델라시크 대학 살과 제주4·3.” 『남아시아연구』 26(3), 63-84.
- 행정안전부. 20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4·3사건법).” <https://www.law.go.kr/법령/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2024년 1월 20일 검색).

영문 자료

- Baaz, Eriksson M. & Maria Stern. 2013. *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war?: Perceptions, prescriptions, problems in the Congo and beyond*. London: Bloomsbury Publishing.
- Burgers, Herman J. & Hans Danelius. 1988.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orture: a handbook on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Vol. 9*. Boston: Martinus Nijhoff Publishers.
- Campanaro, Jocelyn. 2000. "Women, War, and International law: The Historical Treatment of Gender-Based War Crimes." *Georgetown Law Journal* 89(8), 2557-2592.
- Carey, Sabine C., Michael P. Colaresi & Neil J. Mitchell. 2015. "Governments, Informal Links to Militias, and Accountability."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9(5), 850-876.
- Carey, Sabine C. & Neil J. Mitchell. 2017. "Progovernment Militias."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20, 127-147.
- Carpenter, Charli R. 2006. "Recognizing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Civilian Men and Boys in Conflict Situations." *Security Dialogue* 37(1), 83-103.
- Cohen, Dora Kay & Ragnhild Nordås. 2015. "Do States Delegate Shameful Violence to Militias? Patterns of Sexual Violence in Recent Armed Conflicts."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59(5), 877-898.
- Davies, Sara E. & Jacqui True. 2015. "Reframing conflict-related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Bringing gender analysis back in." *Security dialogue* 46(6), 495-512.
- Ferrales, Gabrielle, Hollie Nyseth Brehm & Suzy Mcelrath. 2016. "GENDER-BASED VIOLENCE AGAINST MEN AND BOYS IN DARFUR: The Gender-Genocide Nexus." *Gender and Society* 30(4), 565-589.
- Harff, Barbara & Ted Robert Gurr. 1988. "Toward Empirical Theory of Genocides and Politicides: Identification and Measurement of Cases Since 1945."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2(3), 359-371.
- Nebesar, Darren Anne. 1998. "Gender-based Violence as a Weapon of

- War.” *UC Davis J. Int’l L. & Pol’y* 4, 147.
- Peltola, Larissa. 2018. “Rape and Sexual Violence Used as a Weapon of War and Genocide.” Senior Thesis. Claremont McKenna College.
- Russo, Nancy Felipe & Angela Pirlott. 2006. “Gender-based violence: concepts, methods, and finding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87, 178-205.
- Shaibakova, Kamila D. 2020. “Gender-Based Violence: Typology and Solut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Criminology and Sociology* 9, 1028-1032.
- Sivakumaran, Sandesh. 2007. “Sexual Violence Against Men in Arme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8(2), 253-276.
- Stark, Lindsay & Mike Wessells. 2012. “Sexual violence as a weapon of war.” *JAMA* 308(7), 677-678.
- United Nations Secretary Council. 2008. “Resolution 1820 on acts of sexual violence against civilians in armed conflicts.” (19 June 2008), <https://www.refworld.org/legal/resolution/unsc/2008/en/59523> (accessed 10 January)
- Willett, Susan. 2010. “Introductio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Assessing the I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International Peacekeeping* 17(2), 142-158.
- Wood, Elisabeth Jean. 2009. “Armed Groups and Sexual Violence: When Is Wartime Rape Rare?” *Politics & Society* 37(1), 131-161.

Abstract

Gender-based Violence in Jeju 4·3 Incident

Sukin Jang ■ University of Seoul

The Jeju 4·3 Incident constitutes state violence targeting civilians, including gender-based violence, mass killings, and war crimes. However, throughout the Cold War era, all acts of violence were justified and concealed under anti-communist ideology. In particular, gender-based violence perpetrated against the socially vulnerable during armed conflicts has remained largely silenced. This paper reframes the essence of the Jeju 4·3 Incident through the prism of gender-based violence.

At that time, gender-based violence, primarily perpetrated by military and police forces of the Northwest Youth Corp, included violence and murder against pregnant women and fetuses, sexual torture, killing of escapees and their families, sexual assault and rape, sexual exploitation and murder, mass rape, forced marriage, and forced sexual acts, comprising eight types of mechanisms. These acts were combined with acts of violence constituting war crimes and crimes against humanity under international law, such as civilian killings, mass killings, and torture.

Gender-based violence in the Jeju 4·3 Incident clearly indicates that it was a genocide approved by state power, involving indiscriminate killings and human rights abuses against civilians, which is beyond the level of suppressing certain leftist factions. Therefore, further investigation is necessary to redefine the nature of the Jeju 4·3 Incident.

Key Words: Jeju 4·3 Incident, Gender-Based Violence, Political Genocide, Gender Violence, War Crimes

□ 논문접수일: 2024년 1월 20일, 심사완료일: 2024년 2월 19일,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7일

